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제정 1988. 2. 15 고시 제88-13호

개정 1989. 2. 10 고시 제89- 4호

개정 1991. 7. 4 고시 제91-39호

제 1 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그 주요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 “기본비용”이라 함은 모든 건설공사에 있어서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별도계상비용”이라 함은 기본비용 이외의 각 공사 현장특성에 따라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4. “기본비용계상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무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 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에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② 기타 이 고시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 규칙 · 예산회계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 4 조 (공사의 분류) 이 고시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의 분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의 건설업 사업종류 예시에 의한다.

제 5 조 (계상기준) ①이 고시에서 정하는 안전관리비는 기본비용과 별도계상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건설공사를 티인에게 도급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제2조 제1항 2호의 기본비용을 다음 각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1. 대상액이 5억원미만 또는 50억원이상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X)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C)을 합한 금액

② 법령에 의한 안전조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조 제1항 제3호의 별도계상비용을 적정한 방법으로 공사 설계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 6 조 (계상시기등) ① 발주자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공사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고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 7 조 (수급인의 의무등) ① 수급인은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당해 건설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등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낙찰률이 결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낙찰률로 본다.

② 발주자 및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

자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산출내역서에 명기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 8 조 (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별표 2의 사용예시에 준하여 동표 우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내역서에 계상된 별도계상 비용은 이 고시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확인등) ①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공사진행중 수급인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종료후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노동부 고시 제89-4호)은 이를 폐지한다.

제 3 조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이 고시에 의한 안전관리비로 계상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최초 시행일(88. 2. 15)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장기 계속공사는 부기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1992. 1. 1부터 적용한다.

부록 2

〈별표 1〉 건설공사 종류 및 규모별 기본비용 계상기준표

대상액 공사분류	5억원 미만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비율(X)	기초액(C)	
중 건 설 공 사	3.18(%)	2.15(%)	5,148천원	2.26(%)
철도 · 궤도신설공사	2.33(%)	1.49(%)	4,211천원	1.58(%)
일 반 건 설 공 사	2.48(%)	1.81(%)	3,294천원	1.88(%)

주 : 1. 대상액=재료비(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때에는 당해비용포함)+직접노무비

- 대상액이 50억원인 중건설공사의 예정가격상의 안전관리비는 113백만원이며, 낙찰률이 90%인 경우 수급인은 113백만원의 90%인 101.7백만원 이상을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함.
- 대상액이 10억원인 중건설공사의 예정가격상의 안전관리비는 26,648천원이며, 낙찰률이 90%인 경우 수급인은 26,648천원의 90%인 23,983.2천원을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함.

〈별표 2〉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주요내용, 사용예시 및 기준

- 기본비용(모든 건설현장에서 공통으로 산정해야 하는 안전관리비)

주 요 내 용	사 용 예 시	사용기준
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선임하는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수당, 안전보건을 위한 정리정돈에 소요되는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또는 업무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또는 업무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등 양중기 ○ 안전보건업무 수당 또는 촉탁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담당자 - 산업보건의 - 터널내부에서 화기 또는 아아크를 사용하는 작업의 방화담당자 	총 안전관리비의 40퍼센트 미만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주 요 내 용	사 용 예 시	사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시설의 유지 관리, 현장정리정돈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또는 각종 수당 ○ 기타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위하여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소요되는 제반 인건비 	
나. 안전장치, 개인보호구 등 안전장구에 소요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 수리, 관리등에 소요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울러기, 승강기등의 비상 정지장치 -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데릭 등의 권리방지장치 - 승강기, 호이스트, 리프트 등의 과부하방지장치 - 아세틸렌용접장치, 가스접합 용접장치 등의 역화방지장치 - 교류아아크용접기 등의 전격방지기 - 크레인등의 해지장치 - 목재가공기계 등의 반발예상 장치 - 목재가공기계 등의 톱니접촉 예방장치 - 용접기 등의 누전차단기 - 기타의 안전장치 ○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등 안전보호구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방진장갑, 송기마스크, 면마스크, 산소호흡기, 공기호흡기, 차광보안경등 위생보호구 	총 안전 관리비의 30퍼센트 미만(나항 및 다항을 합한 금액)
다. 사업장의 안전보전 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 분진, 소음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 자체안전보건점검 및 기술자문에 소요되는 제비용 ○ 각종 가스탐지기, 산소농도측정기등 유해작업장계측설비에 소요되는 제비용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소요되는 제비용 	
라. 법령에 의거 실시되는 각종 안전보건직무교육, 사내안전보건교육, 근로자 및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및 보수교육 ○ 안전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및 보수교육 	총 안전 관리비의 30퍼센트 미만 (라 항,

부록 2

주 요 내 용	사 용 예 시	사용기준
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등에 소요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감독자교육 - 신규채용시교육 - 작업내용변경시교육 ○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면허 취득 또는 기능 습득을 위한 교육 ○ 교육교재, 교육용팜프렛, 슬라이드, 영화, VTR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등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견학, 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마항 및 바항을 합한 금액)
마. 위생설비, 구급기재 등의 확보 및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자의 응급처치 및 치료용 구급기재등에 소요되는 비용 ○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등 ○ 기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제비용 	
바. 기타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보건상의 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행사비, 포상비, 각종 서식비등 사업장 안전 관리업무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작성, 심사 및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2. 별도계상비용(각공사 현장특성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적산하는 안전관리비)

주 요 내 용	사 용 예 시	사용기준
가. 작업중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안전난간 - 추락방지용방망 - 안전대결이용 로우프 - 추락위험장소 접근금지방책등 근로자의 추락방지용 설비 또는 시설 ○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호선반 - 낙하물방지망 -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또는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안전시설의 제작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료 및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총안전관리비의 30¢ 미만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주 요 내 용	사 용 예 시	사용기준
	<p>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안전장구 및 안전용품 등에 소요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안전탑, 무재해기록판, 안전수칙판 등 안전표시 및 경고설비 - 신호수용반사조끼, 용접용토시(자켓), 수상작업자용 구명용품, 안전발파등, 안전깃발, 신호용랜턴(신호등), 차량유도등, 위험경보기등의 안전장구 및 용품 ○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진설비 - 터널, 개내등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 긴급대피방송시설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참고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 건설업의 종류

— 고시 제4조(공사의 분류) 관련 —

건설공사

원칙적으로 건설업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도급 또는 직영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과 건설사업의 형태를 갖춘 사업으로서 토목건축업자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 또는 침몰물의 인양사업이 해당된다.

(건설공사의 기획, 조사, 측량, 설계, 감독 등을 행하는 사업과 토목건축업자 등이 금속, 비금속, 석회석 또는 석유, 천연가스 등 광물을 채취하기 위한 시굴, 갱도굴진작업 또는 쟁내에서 행하는 시설공사 등을 주로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제외)

건설공사는 현장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공사를 지칭한다.

1. 건축물 토목시설 기타 토지에 계속적으로 접착될 공작물 또는 이에 부대하는 설비의 신설, 개수, 수선, 해체, 제거 또는 이설
2. 토지, 항로, 유로 등의 개량 또는 조성
3. 기계장치의 설치, 해체 또는 이설

일반건설공사

○ 중건설공사 또는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이외의 건축건설 및 기계장치, 도로신설 등
일반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공사
현장내에서 행하는 사업

1. 건축건설 공사

건축 및 교량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목조, 연와조, 블록조, 석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건물건설공사

— 건축물의 신설공사와 그의 보수 및 파괴
공사 또는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
설공사

○ 주택, 축사(畜舍), 가건물, 창고, 학교, 강당,
체육관, 사무소, 백화점, 점포, 공장, 발전소,
특수공장, 연구소, 병원, 기념탑, 기념건물,
역사(驛舍) 등을 신축, 개축, 보수, 파괴, 해
체하는 건설공사

○ 철골,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조 가옥을 이축
(移築)하는 공사

○ 구입한 철파이프를 절단, 벤딩(구부림) 조

립하여 축사(畜舍) 등을 건설하는 공사

– 건축물 설비공사

- 당해 건축물내외의 전기, 전등, 전신기 등의 설비공사
- 당해 건축물내외의 송배전선로, 전기 배선, 전화선로, 네온장치 등의 부설공사
- 당해 건축물내외의 급수 및 급탕등의 설비공사
- 당해 건축물내외의 안전 및 소화등의 설비공사
- 당해 건축물내외의 난방, 냉방, 환기, 건조, 온습온도조절등의 설비공사
- 당해 건축물의 도장공사 및 시멘트 취부(吹付) 방수공사
- 당해 건축물의 설비를 위한 석축, 타일, 기와, 슬레이트 등을 부설하는 건설공사
- 당해 건축물내에 냉동기의 부설에 일관하여 행하여지는 난방 및 냉동등의
- 기타 건설물의 설비공사
- 건물내의 아이스스케이팅 설비에 관한 공사
- 기타 건축물의 설비공사

– 내장, 유리, 온창, 조원(造園) 등의 기타 전문 제공사

○ 교량건설공사

- 일반교량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공사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기설(既設) 교량의 보수와 개수에 관한 공사, 교량에 교각 교대 등의 기초건설공사 기타 교량의 보수공사
- 선창(船艙)의 건설공사
- 도로, 철도, 궤도, 수로 등의 신설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4,000만원 이상의 교량의 시설공사

2. 도로신설 공사

- 도로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공사
 - 도로 또는 광장의 신설공사
 - 기설(既設) 도로의 변경, 굴곡의 제거 및 확장공사
 - 도로 및 광장의 포장공사(사리살포(砂利散布) 공사 포함)
 - 도로신설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4,000만원 미만의 터널공사와 건축공사
 - 도로신설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4,000만원 미만의 교량 건설공사

3. 기계장치 공사

- 각종의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 각종의 기계 및 기구장치를 위한 기초 처리공사
 - 기계 및 기구장치를 위한 기계대(機械臺) 건설공사
 - 보일러, 기증기, 양증기 등의 조립 및 부설공사
 - 전기수진기(電氣收塵機), 공기압축기, 건조기, 각종 운반기 등의 조립 및 부설공사
 - 석유정제장치, 펌프제조장치등과 같은 기계기구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 색도(索道) 건설공사
 - 화력 및 원자력발전시설의 설치공사
 - 변전소 설치 및 수리(修理) 공사
 - 기타의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설치공사 또는 해체공사
 - 기계장치의 수리공사
 -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의 설치공사

- 화력, 원자력 및 수력발전소의 수리공사
(단, 산세정(酸洗淨) 공사 제외)
-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 도시가스제조 및 공급설비공사

4. 기타 건설공사

-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다만, 철도 또는 궤도의 신설공사에 단순히 노무 용역과 건설기술만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 건축건설공사, 도로신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기타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수력발전시설 및 댐시설 이외의 제방건설공사
 - 기설터널의 보수 및 복구공사
 - 기설의 도로, 철도, 궤도 등의 개수, 복구 또는 유지관리의 공사(기설로면에 레일만을 부설하는 공사 포함)
 - 구내에서 인입공사 증설공사등
 - 옹벽축조의 건설공사
 - 기설도로 또는 플랫폼 등의 포장공사
(사리살포(砂利散布), 잔디붙이기공사등 포함)
 - 공작물의 해체, 이동, 제거 또는 철거의 공사
 - 하천의 제방, 제방수문, 통문(桶文), 갑문 등의 신설개수에 관한 공사
 - 관개용수로, 기타 각종 수로의 신설개수, 유지에 관한 공사
 - 운하 및 수로 또는 이의 부속건물의 건설공사
 - 저수지, 침전지, 푸울장 등의 건설공사
 - 사방(砂防) 설비의 건설공사
 -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암벽 등의 건설공사(40101) 세목(細目)의 고방제방(댐) 등 신설공사 이외의 공사

- 호반, 하천 또는 해면의 준설, 간척 또는 매립 등의 공사
- 비행장, 골프장, 부지 또는 광장의 조성 공사
- 개간, 경지정리, 부지 또는 광장의 조성 공사
- 지하에 구축하는 각종 물탱크의 건설공사
(기초공사 포함)
- 철관, 콘크리트관, 케이블류, 가스관, 흡관, 지중선, 동재(銅材) 등의 매설공사
- 침몰된 공작물의 인양공사
- 수중오물 수거작업공사
- 기타의 각종 건설공사(건설공사를 위한 시추공사 포함하나 광업시추 및 시굴공사는 제외)
- 각종 운동장 스탠드 건설공사
- 체토사(滯土砂)의 봉괴 및 낙석 등의 방지벽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내에서 행하는 각종 공사
- 과선교(跨線橋)의 건설공사
- 철탑, 연돌, 풍동(風洞) 등의 건설공사
- 광고탑, 탱크등의 건설공사
- 문, 담장, 축대, 정원등의 건설공사
- 용광로의 건설공사
- 전차궤도의 송전가선의 건설공사와 그 보수공사
- 송전선로, 통신선로 또는 철관의 건설공사 및 기계장치의 산세정(酸洗淨) 공사
- 신호기의 건설공사
- 상수도관 세척공사
- 기타의 각종 건설공사
 - 일반경상보수의 용역사업은 이에 분류

- 후각사업세목(後各事業細目)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다른것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중건설공사

1. 고제방(댐)등 건설공사

- 제방의 기초지반(터파기 밑나비가 10m이상인 경우에는 그 최심부)에서 그 정상까지의 높이가 20m이상되는 제방 및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안벽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 제방의 신설에 관한 가설공사 또는 기초공사
 - 제방의 신설공사장내에서 시공하는 제방체, 배사구(排砂口), 가제방, 골재채취, 송전선로, 철탑, 발전소, 변전소 등의 신설공사
 - 제방공사용 자재의 운반을 하기 위한 도로, 철도 또는 궤도의 건설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취수구, 배수로, 가배수로, 여수로, 하수구의 복개, 물탱크 등의 취수시설에 관한 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수력발전시설용의 터널 또는 토석제방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기설 수력발전소의 수로를 이용하여 유수량의 조절등을 목적으로 시공하는 저수지의 신설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의 각종 기계의 철관의 조립 또는 그 부설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홍수조절 관개용수로 또는 발전 등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다목적댐 건설공사
 - 제방의 신설공사를 건설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사무소, 종업원의 숙사, 취사장 등을 건설하는 공사
 -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안벽 등의 건

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2.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 이 분야에서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고제방(댐) 신설공사 및 터널 신설공사등과 이 공사에 부대하여 당해공사 현장내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에 관한 가설공사 또는 기초공사
 -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내에서 시공하는 제방체, 배사구(排砂口), 가제방, 골재채취, 송전선로, 철탑, 발전소, 변전소등의 건설공사
 -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 자재의 운반을 하기 위한 도로, 철도 또는 궤도의 건설공사
 - 수력발전시설의 신설에 따른 취수구, 배수로, 가배수로, 여수로, 하수구의 복개, 물탱크 등의 취수시설에 관한 공사
 - 수력발전시설용의 터널 또는 노석제방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
 - 기설의 수력발전소의 수로를 이용하여 유출량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시공되는 수력발전조절지(저수지)의 신설공사
 -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 배처프랜트, 시멘트, 사이로 골운반용의 벨트, 콘베이어 등의 기계와 철관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 수력발전시설에 따른 홍수조정관개용수 보급 또는 발전 등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다목적댐 시설공사
 - 수력발전의 신설공사를 위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사무소, 종업원의 숙사, 취사장

등을 건설하는 공사

- 가타 색도건설공사

3. 터널 신설공사

- 터널신설에 관한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내면설비공사
 - 터널신설공사 현장내에서 시공하는 가설공사, 쟁도굴착공사, 토사 및 암괴지의 운반처리공사, 배수시설공사 또는 터널 내면 설비공사
 - 터널신설공사 현장내에서 시공하는 노면포장, 사리(砂理)의 살포, 궤도의 신설,

건축물의 건설, 전선의 가설, 전등 및 전화의 가설등의 건설공사

- 도로, 철도, 궤도 수로 등의 신설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4,000만원 이상의 터널신설공사
- 지반에서 10m이상의 지하까지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철도, 지하철,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등의 인입통신구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사업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굴착식으로 시공하는 지하철도 및 지하도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1.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 철도 또는 궤도의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공사(다만, 노무용역과 건설기술만을 제공하는 사업은 기타 건설로 분류)
 - 철도 및 궤도의 건설용 기계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 철도 및 궤도신설공사에 따른 역사·교선교(跨線橋), 송전선로등의 건설공사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와 병행하는 4,000만원 미만의 터널공사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4,000만원 미만의 교량신설공사

철도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공사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지반으로부터 10m 이내의 지하에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또는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공사 현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다만, 구내에서 인입공사 중선공사와 철도, 궤도의 보수복구 공사는 400일반건설공사에 분류

* 주

이 사업에서 신설이란 신설선의 건설, 단순을 복선으로 하는 경우 등 신설형태로 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2. 고가 및 지하철도 신설공사

- 철골조, 철근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고가